

행정기관명

수신

제목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

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(귀법인)가 년 월 일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음을 통지합니다.

결정된 체납처분 유예의 구분								
체납처분 유예가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 수금	부과연도	기분	과목	부과번호	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			비고
					계	지방행정제재 · 부과금	가산금	
	체납처분비							
	합계							
결정된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		
분할납부 금액		납부기한		납부장소			비 고	
1회								
2회								
:								
체납처분 유예의 효력 발생일			년 월 일					

끝.

발신명 의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